



**박형철**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지역본부  
보건관리국 원장·예방의학전문의

## 「산업안전보건법」 속 노동자의 건강

### 「산업안전보건법」 내 보건의 한계

노동자의 건강을 다루는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1981년 제정된 이 법은 48조로 비교적 간결하게 출발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82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총칙, 안전·보건관리체제, 유해위험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등 7장으로 구성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늘날까지 4차례의 전부개정을 포함해 50회 이상 개정되었다. 가장 최근의 전부개정은 2019년에 있었고, 현재는 제정 당시보다 127조가 늘어난 175조(본문 기준)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시행령(본문 119조) 및 시행규칙(본문 243조)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본문 673조) 등 고용노동부령 3개를 합하면 큰 분량의 법령으로 변화했다.

법의 목적은 제정 당시와 현재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최근 사용자의 책임이 강화되었고 근로자 대신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사회 분화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보인다. 즉, 특수형태근로자(특고직)와 배달앱 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명칭이나 목적에 비춰봤을 때 노무제공자(법 개정 이전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두 축이 법의 근간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방대한 법이 현대 산업사회의 보건의료를 충분히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법상 보건 관련



근거는 8장 ‘근로자의 보건관리’에서 다루어진다. 1절 ‘근로환경 개선(125조 작업환경측정 등)’과 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가 있다. 안전과 보건을 토대로 갖추곤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 관련 법 조항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산업안전 관련 조항에 비해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건 관련 조항이 질적 양적 측면에서 빈약한 실정이다. 실제 안전에 관한 조항은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자의 건강을 다루는 조항의 구성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존재하더라도 보건학적 견해와 동떨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산업보건법」보다는 「산업안전법」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많은 조항에서 안전과 보건을 나란히 두면서 균등하게 다룬 듯 보이지만, 건강 또는 직업병 발생은 별도의 학문이며, 보건학 또는 산업의학 측면에서 접근해야 효과적이다.

### 질환의 심각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건 조항

근골격계질환은 「산업안전보건법」 39조(보건조치) 1항 5호의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근거로 한다. 안전보건규칙 656조(정의) 657조(유해요인조사), 658조(유해요인조사방법 등), 659조(작업환경개선), 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조항에서 근골격계질환을 다루고 있다. 높은 유병률을 지녔음에도 보건과 분리해 여러 법 조항으로 나눠 조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프로그램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뇌심혈관질환은 작업관련성 질환<sup>1)</sup> 중 근골격계질환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병이다. 근골격계질환은 질병 부담이 크고, 작업 저해 요인에 속하지만 생명을 위협하진 않는다. 그러나 뇌심혈관질환은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매우 위중한 질환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측면에서 중요도가 매우 크다.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5조 사업주의 의무 ‘안전 및 건강 유지·증진’과 같은 조 2항의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등을 들고 있다. 안전보건규칙 669조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연결된다.

장시간 근로, 야간·교대근무, 차량 운전,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 스트레스가 많은 작업을 하는 경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의 경

1) 고용노동부, 2022 산업재해현황분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중심으로)

우, 스트레스 평가와 노동시간 단축 등 개선대책을 권장한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 가능성 및 대책을 노동자에 설명하며, 뇌혈관 및 심장 질환 발병 위험도를 평가하고, 금연·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주로 노동자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의 밀반침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조항은 질환의 심각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직무 스트레스가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임은 분명하지만, 이 질환의 다양한 위험요인과 역학적, 병리적 기전을 충분히 담아 내지는 못한다. 특히 뇌혈관 및 순환기계 의학의 발전과 변화를 비롯해 개별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상태를 충분히 담아내는데도 의문이다. 보건관리자의 역량과 사업주의 관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 노동자를 위한 「산업보건법」 분리의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일반건강진단)와 130조(특수건강진단)는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사후 개입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검진 등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포괄적인 건강을 다루는 데 취약한 점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검진이나 보건관리대행 서비스 측면에서 특수·일반 건강진단과 사후관리에 경도되어 예방 사업이나 공중보건학적 접근이 제한된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1차, 2차 예방 접근보다는 질병이 한참 진행된 후 진단과 사후 보상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판정 시 판정 역할에 국한된다는 검진 의사의 자조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또한 모법과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에 노동자의 건강이나 보건의료 관련 조항에 산재해 있어 노동자의 보건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건의료는 빙산의 일각처럼 보인다. 보건과 안전의 경계가 모호하며, 접근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보건과 안전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면서 통섭할 수 있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현재의 산업보건에서 노동자를 위한 공중보건과 예방의 관점을 강화하고, 「산업보건법」과 「산업안전법」을 분리하여, 노동자 건강관리 관련 법령을 별도로 입법한다면 지금보다 더 노동자의 건강 보호 및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